

<p>제2024-28호 2024년 3월 22일(금)</p>	<p>시  보</p> <p>여수시</p>	<p>시 정 지 표</p> <p>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4-107호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1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4-962호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후보자 모집 공고 3
- 여수시 공고 제2024-963호 2024 여수 재즈 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 입찰공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24-969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 여수시 공고 제2024-970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 여수시 공고 제2024-975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 부용건설(주) 37
- 여수시 공고 제2024-976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 삼환종합건설(주) 38

회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2.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 · 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643-4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길 5	2024032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창무리 300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화양로 1714-17	20240322		20091013	도로가 지나는 지역 화양면을 반영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동 382-47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1길 15-4 (오림동)	2024032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1757-4, 974-1	전라남도 여수시 예올마루로 83-3 (웅천동)	20240322		20110209	문화예술공원 예올마루로 연결 되는 도로	웅천 장도공원 관리사무소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674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22	2024032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화장동 795-1	전라남도 여수시 성산1길 8-3 (화장동)	2024032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화장동 공영주차장
건물번호변경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마상포길 32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마상포길 32-1	20240322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오림1길 15-4 (오림동)		20240322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1길 22		20240322	건축물 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후보자 모집 공고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함에 있어 모집인원 및 신청방법 등을 미리 알려 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후보자를 모집하고자「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여 수 시 장

1. 모집기간 : 2024. 3. 21. ~ 4. 5.(15일간)

2. 모집인원 : 60명

-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15인 이내
- 읍·면·동별 지역회의 위원 추천 : 27인 이내
- 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 5인 이내
-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추천 : 5인 이내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8인 이내

3. 모집분야 : 6개 분과

분 과 명	소 관 부 서	인 원 수
계		60명
행 정 지 원	의회사무국, 보좌기관, 행정안전국,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10명
복 지 · 환 경	교육복지국, 환경복지국	10명
문 화 · 관 광	문화산업국, 수산관광국, 섬박람회지원단	10명
보 건 · 상 하 수 도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10명
농 업	농업기술센터	10명
도 시 건 설 · 시 설	건설교통국, 시설관리사업단	10명

4.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출 건의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5.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주민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6. 위원 임기 : 2년(연임 가능)

7. 선정 방법 : 서면심사 후 적격자 선정·위촉

8. 선정 기준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증빙서류 제출)

* 여수시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본점(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재정·예산·행정 등 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등 우선 고려하여 선정

○ 대학교수, 회계사, 세무사, 예산분야 유경험자 등 회계 관련 전문가 우선 선정

○ 지역회의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 능력

○ 해당지역 읍면동에 거주 중인 주민(읍면동 추천자의 경우)

○ 사회적 약자(장애인, 수급자,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우선 고려

※ 단,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자는 제외

: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중복 위촉 및 동일 위원회 3회 이상 연임 금지

9. 대상자 선정 통보 : 2024. 4. 26.한(개별 통보)

10. 신청서 접수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붙임 2] 또는 위원 추천서[붙임 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3]

- 지원자 이력서 1부[붙임 4]

○ 접수처

-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접수 방법

- 방 문 :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메 일 : smy486@korea.kr
- 팩 스 : 061-659-5813
- 우 편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기획예산담당관

11. 기타 참고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소인된 우편물만 유효하며, 위원 위촉 후 중요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 구성 등)에 따라 여수시 운영 3개 위원회 위촉자 및 동일 위원회의 3회 이상 연임자는 제외됩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061-659-3417)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원 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여 수 시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학력, 경력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4. 4. ~ 2026. 4. (2년) * 위원 해촉 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위원회 선정될 수 없습니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 공 항 목	제 공 목 적	보 유 · 이 용 기 간
여 수 시	성명, 소속, 직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공개 시	2년 (위원 해촉 시까지)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붙임 4**지원자 이력서**

사 진	이 력 서	
	성명(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등록기준지		
주 소		
년 월 일	학 력 사 항	학 교 명
년 월 일	경 력 사 항	기 관 명
년 월 일	포 상 및 형 별 사 항	기 관 명

이력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인)

2024 여수 재즈 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2024 여수 재즈 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을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2024 여수 재즈 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
- 나. 용역기간 : 용역 착수일 ~ 2024. 5. 31.까지
- 다. 용역내용 : 여수 재즈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등
- 라.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의 일반사항

-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 다. 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3.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 다음 각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개인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호, 2024. 1. 24.)」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행사대행업” 으로 등록한 업체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가 소재하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 나.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공동계약 : 본 용역사업은 공동수급참여가 불가

5. 제안서 제출

- 가. 일 시 : 2024. 4. 1.(월)/ 1일간, 16:00 ~ 17:00
 - 나. 접수장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1(학동)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라.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 제안서는 업체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서란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위임장 1부, 인감도장(사용 인감) 지참

6.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12.21.)과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 절차를 통하여 결정합니다.
-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상에 첨부된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표에 의거합니다.
-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 1) 일시장소 : 2024. 4. 8.(월) 14:00 여수시 생활문화센터(프로그램실)
 - ※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제안설명 : PT발표(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
 -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에 의하며, 비공개 원칙
-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협상기간 및 계약체결

- 가.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체결은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 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서 제출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시 규정에 따릅니다.

2024년 3월 22일

여수시 재무관

여수시 공고 제2024-969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치환을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조례 12건을 일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여 수 시 장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관련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괄로 자치법규 정비 필요

2. 개정 대상 조례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여수시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 2024. 3. 22. ~ 3. 31.(9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라. 제출기관 : 여수시장(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 팩 스 : 061-659-5813
- 전자메일 : yy0366@korea.kr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061-659-34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찬성	반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3조(「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4조(「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 및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재·행정·교육·언론”을 “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를 “문화유산보호”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재관련업무”를 “국가유산관련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관련업무”를 “국가유산관련업무”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지정문화재로의”를 “지정유산으로의”로, “지정문화재의”를 “지정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관련”을 “국가유산관련”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담당부서”를 “국가유산담당부서”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9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법”으로 한다.

제6조(「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체육시설·문화재”를 “체육시설·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여수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다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법」”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이하 “문화재”)”를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이하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2조(「여수시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문화산업국) ① (생 략) ② 문화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u>문화재</u> 발굴 · 관리, 문화예술행사 2. ~ 21. (생 략)	제6조(문화산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u>국가유산</u> ----- ----- 2. ~ 21. (현행과 같음)

2. 여수시 시세 감면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u>문화재에 대한 감면</u>) (생 략)	제4조(<u>국가유산에 대한 감면</u>) (현행과 같음)

3. 여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생 략) ② 시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p>정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p>
---	---

4.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협의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해당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1.·2. (생략)</p> <p>3. <u>문화재 및 문화재 활용</u> 관련 전문가</p> <p>4.·5. (생략)</p> <p>6. 그 밖에 <u>문화재·행정·교육·언론</u> 등 관련분야 전문가</p> <p>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생략)</p> <p>②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p>	<p>제8조(협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국가유산 및 국가유산</u> ----- -----</p> <p>4.·5. (현행과 같음)</p> <p>6. ----- <u>국가유산·행정·교육·언론</u>-----</p> <p>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문화재청장</u>,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p> <p>③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기능 등을 <u>문화재청장</u>,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과건할 수 있다.</p>	<p>----- <u>국가유산청장</u> ----- ----- -----.</p> <p>③ ----- ----- <u>국가</u> <u>유산청장</u>----- ----- ----- -----.</p>
---	--

5.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u>문화재보호법</u>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u>문화재</u>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향토의 역사·예술·학술 및 경관적으로 보존·보호·관리 할 가치가 있다고 지정 또는 인정되는 유형·무형·기념물·</p>	<p>제2조(정의) ----- -----.</p> <p>1. ----- <u>문화</u> <u>유산법</u>----- ----- <u>국가유산으로</u> --- ----- ----- ----- -----</p>

민속자료 등(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생략)

제3조(위원회 설치) ①·② (생략)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관련업무 소관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을 포함하여 문화재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재관련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략)

4. 문화유산의 국가 또는 도 지

-----.

2. (현행과 같음)

제3조(위원회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국가유산관련업무 -----.

④ -----
----- 국가유산 -----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국가유산관련업무 -----
-----.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지정

정문화재로의 승격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정문화재의 복원·보존·보호·관리의 건의에 관한 사항

6. (생략)

② (생략)

제6조(전문위원) ① (생략)

② 전문위원은 문화재관련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제9조(보호구역 지정) ① (생략)

② 시장은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문화재담당부서 및 위원 3인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제15조(경비보조 등) ① (생략)

유산으로의 -----

- 지정유산의 -----

5. 지정유산-----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전문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유산관련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보호구역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유산담당부서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경비보조 등) ① (현행과

<p>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 문화유산(개인·단체)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u>도지정문화재</u>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의 50퍼센트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17조(기록작성 및 보관) ① (생략)</p> <p>② 시장은 필요시 전문위원 또는 <u>문화재</u>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 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p> <p>제19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u>문화재보호법</u>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p>	<p>같음)</p> <p>② ----- ----- ----- <u>도지정</u> <u>유산</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기록작성 및 보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국가유산</u>----- -----.</p> <p>제19조(준용 규정) ----- ----- - <u>문화유산법</u> ----- -----.</p>
--	--

6. 여수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4조(유물의 구입) ① ~ ③ (생략)</p> <p>④ 시장이 경매를 통해 유물을</p>	<p>제4조(유물의 구입)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구입하거나, 국가 또는 시도 <u>지정문화재</u>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현지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한다.</p> <p>⑤ (생략)</p> <p>제14조(유물평가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u>문화재</u> 및 유물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해당 유물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 ⑧ (생략)</p>	<p>----- <u>지정유산</u></p> <p>-----</p> <p>-----</p> <p>-----</p> <p>-----</p> <p>-----.</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4조(유물평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국가유산</u> -</p> <p>-----</p> <p>-----</p> <p>-----</p> <p>-----.</p> <p>④ ~ ⑧ (현행과 같음)</p>
---	--

7. 여수민속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9조(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② 위원은 <u>문화재</u> 및 유물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유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p>	<p>제29조(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국가유산</u> -----</p> <p>-----</p> <p>-----</p> <p>-----.</p>

<p>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시가 설치·관리하는 <u>문화재</u>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p> <p>4. ~ 9. (생략)</p> <p>② (생략)</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국가유산</u> -----</p> <p>4.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10.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3)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p> <p>가. · 나. (생략)</p> <p>다. 「<u>문화재보호법</u>」에 따른 <u>문화재</u> 및 「여수시 문화</p>	<p>제12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 ----- ----- ----- -----.</p> <p>1. ----- -----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문화유산법</u>」----- <u>국가유산</u> 및 -----</p>

<p>유산보호관리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 부지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p> <p>2. ~ 4. (생략)</p> <p>제2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p> <p>2. 시장이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건축물</p> <p>②·③ (생략)</p>	<p>-----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29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 ----- -----.</p> <p>1. 「문화유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이하 “국가유산” ----- -----</p> <p>2. ---- 국가유산의 ----- ----- 국가유산청장-----</p> <p>②·③ (현행과 같음)</p>
---	--

11.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현행	개정안
<p>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p>	<p>제8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호의 사항은 법 제9조제1항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 5. (생략)</p> <p>6. <u>문화재</u> 복원공사의 경우</p> <p>7. (생략)</p> <p>③ (생략)</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국가유산</u> -----</p> <p>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

12. 여수시 야외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6조(설치장소) ① (생략)</p> <p>② <u>문화재</u>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6조(설치장소)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국가유산</u> -----</p> <p>-----</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

여수시 공고 제2024-970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치환을 중심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여 수 시 장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관련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괄로 자치법규 정비 필요

2. 개정 대상 규칙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 예고기간 : 2024. 3. 22. ~ 3. 31.(9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3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라. 제출기관 : 여수시장(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학동),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 팩 스 : 061-659-5813
- 전자메일 : yy0366@korea.kr

6.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담당관(☎ 061-659-34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그 밖의 참고사항
	찬성	반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무형 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사적)보호”를 “국가유산(사적)보호”로, “문화재 발굴”을 “국가유산 발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 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제16조(문화유산과) ----- -----.
1. <u>문화재관리</u>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1. <u>국가유산관리</u> ----- -----
2. <u>유·무형 문화재</u> 의 보호 육성	2. <u>유형문화유산·무형유산</u> ----- --
3. <u>지정문화재</u> 보호구역 및 보존지구 지정 관리	3. <u>지정유산</u> ----- -----
4. <u>문화재(사적)보호</u> 관리 및 <u>문화재 발굴(보수) 조사</u>	4. <u>국가유산(사적)보호</u> --- <u>국가유산 발굴</u> -----
5. <u>문화재</u> 복원 및 보수 계획 수립·시행	5. <u>국가유산</u> ----- -----
6. <u>매장문화재</u> 보호관리	6. <u>매장유산</u>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u>문화재</u> 활용사업 공모 및 추진	8. <u>국가유산</u> ----- -
9. <u>문화재</u> 매매업소 관리	9. <u>국가유산</u> -----
10. <u>문화재(사적)</u> 관람료 징수 및 사용허가	10. <u>국가유산</u> ----- -----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12. <u>문화재(사적)</u> 주변 정화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 관리	12. <u>국가유산</u> ----- -----
13. ~ 18. (생략)	13. ~ 18. (현행과 같음)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신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부용건설(주)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만성로 25
3. 법인 등록번호 : 214211-0001087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여수-24-마-04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024. 3. 22.

2024년 3월 22일

여 수 시 장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신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호 및 대표자 : 삼환종합건설(주)
2. 영 업 소 재 지 : 전남 여수시 시청서4길 46-8
3. 법인 등록번호 : 206211-0019105

업종명	등록번호	주력분야	등록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여수-24-가-03 여수-24-바-01	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2024. 3. 22.

2024년 3월 22일

여 수 시 장